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88

발의연월일: 2025. 1. 14.

발 의 자:박 정·김정호·임오경

권칠승 • 안호영 • 부승찬

송옥주 • 박홍배 • 강유정

김태선 • 어기구 • 윤후덕

허 영·강득구·신정훈

김문수 · 조계원 · 김영화

이연희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학자금대출이 여타의 금융권 대출에 비하여 신용을 낮게 평가받고 있어 향후의 금융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학자금대출은 모든 국민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자금대출로 인한 대학생의 금융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함으로써 학

자금지원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제5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가의 책무) (생 략)	제5조(국가의 책무)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국가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금융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